

-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-

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7 - 32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6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인 「감자꽃 스튜디오」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서를 얻고자 함.

2. 추진개요

- 법적근거: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,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
- 재산소재: 평창읍 이곡리 333번지 일원
- 위탁시설: 건물 2동(연면적 950.32㎡), 토지 5필지(면적 8,247㎡)
* (붙임 1) 감자꽃 스튜디오 시설현황
- 위탁기간: '17. 9. 1. ~ '19. 8. 31.(2년)
- 사용료: 수익시설로 사용시(매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/1,000부과)
- 수탁자 선정: “공개모집”
* (기 수탁자) 이선철, '15. 9. 1. ~ '17. 8. 31.
- 추진절차

- ① (추진계획수립 및 방침결정) 수탁자 선정기준, 위탁시설 등 결정
- ② (군 의회 동의) 민간위탁 사무
- ③ (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)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
- ④ (수탁기관 선정)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,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결정
- ⑤ (위·수탁협약 체결) 협약서 작성, 위탁기간 2년
*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사용료에 관한 사항, 수탁자의 의무,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- ⑥ (시설 인수·인계) 인수·인계서 작성
- ⑦ (공증) 협약내용

3. 주요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: '17. 6. 9.
- 군 의회 동의(민간위탁 사무): '17. 6. 23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- * (조례내용/ 제3항)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의를 얻어야 함.

-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: '17. 7. 15.까지

- * (공고방법)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
 - 1차 공고시 대상이 없거나 신청자가 1인 경우 재공고
- * (신청자격)
 - 등기·등록된 문화예술분야 법인·단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인
 -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
 - 기타 유명 문화예술분야 법인, 단체 및 예술인으로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

-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: '17. 7. 20.

- * (법적근거) 「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(구성)
단, 신청자 1인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
- * (위원구성) 6명(공무원 2, 민간인 4), 위촉직
- * (심의사항)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·선정
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: '17. 7. 27.
- 심사결과 보고 및 수탁자 선정 개별 통보: '17. 8. 3.
- 위탁 협약체결 및 인수·인계: '17. 8. 7.
- 협약내용 공증: '17. 8. 8.

4. 기대효과

- 평창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문화예술체험 학습 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
- 폐교를 활용한 문화향유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【붙임 1】

감자꽃스튜디오 시설현황

□ 건물

구분	연면적(m ²)	위탁시설	관리주체
계	950.32	2개	
가동	701.64	지상 2층(전시실 및 사무실 등 시설 일체)	문화관광과
나동	248.68	지상 1층(전시실 일체)	“

□ 토지

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(m ²)	소유자	비고
계	5필지		8,247		
평창읍 이곡리	333	대	1,675	평창군	
“	332-1	대	1,176	“	
“	333-1	대	308	“	
“	377-6	대	200	“	
“	453-1	하천	4,888	“	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③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1>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.

④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·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수 있다.

⑤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

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제1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.

1.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문화예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책임능력
4.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
5.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
6. 창작스튜디오 세부운영계획, 관람료, 입장료, 상품판매 등 수익사업계획